

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

(앞 쪽)

우 편 엽 서

보내는 사람

자동차정기검사 주소:

명령서

자동차등록번호:

정기검사일:

□□□-□□□

받는 사람

주소:

성명:

□□□-□□□

(뒤 쪽)

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

앞쪽에 기재된 귀하(사)의 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·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, 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(팩스)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(사)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주: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의 내용은 추가하거나 바꾸어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.